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7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외체류 기간 중 요양비 지급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1.

(3) 회 부 일 : 2025. 1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외체류 기간 중 요양비 지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국외 체류 기간이 보험료 면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u><신설></u>	제54조(급여의 정지) ① (현행 제60조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외 체류 기간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행일: 공포한 날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수급권 보호 차원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③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④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⑤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⑦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¹⁾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²⁾.

1) 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구입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양압기 등의 대여 등 요양비 급여대상이 정해져 있고, 의사의 진단 및 검사결과에 따라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후 요양비 급여대상을 구입 또는 대여하면 공단에서 요양비 급여조건 등을 심사한 후 비용을 지원함.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 가. 복막관류액
 -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이하 생략)

<요양비 급여대상>

구분	품목	급여대상자
구입 품목	복막관류액·재료	만성 신부전 환자 중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한 자
	당뇨 소모성재료	인슐린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1형, 2형 당뇨, 임신 중 당뇨)
	자가도뇨카테터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선·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대여 품목	가정용 산소발생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호흡기 장애 혹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자가 호흡이 어려워 생명유지 장치 도움이 필요한 중증질환자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자
	양압기	수면무호흡증으로 수면 중 저산소증이 우려되는 자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됨³⁾.

- 이에 따라 요양비 중 기기(양압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기기 대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약 7억 1,100만원의 기 지급된 요양비를 환수하였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요양비 환수 현황(2020년 ~ 2024.7월)>

각 연도별 환수결정일 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8	16,710	45	5,338	120	17,067	670	114,152	21,640	557,643
출 산 비	-	-	-	-	-	-	-	-	-	-
만 성 신 부 전	-	-	-	-	-	-	1	56	-	-
산 소 발 생 기	2	468	6	630	-	-	29	5,953	-	-
당뇨소모성재료	40	5,430	13	1,870	32	6,810	138	29,567	15	4,697
자 가 도 뇨	3	1,045	1	729	1	729	23	15,198	1	729
인 공 호 흡 기	-	-	-	-	2	778	36	9,276	1	161
기 침 유 발 기	-	-	-	-	-	-	5	759	-	-
양 압 기	152	9,620	25	2,109	85	8,750	431	52,314	21,623	552,056
당뇨관리기기	1	147	-	-	-	-	7	1,029	-	-

※ 법 제54조(급여의 정지) 개정('20.7.8. 시행)⁴⁾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에 무관하게 환수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관련 행정적 제반사항 및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간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국외 체류기간에 무관하게 환수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요양비를 환수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4) 2020.4.7.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2020.7.8. 시행됨.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4. (생 략)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삭 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 이와 관련하여 양압기 등 일부 요양비 급여대상의 경우 기기를 대여하는 것이므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⁵⁾에도 불구하고 국외 체류를 이유로 그에 대한 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⁶⁾.

□ 이에 개정안은 요양비 급여대상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외 체류 기간이 보험료 면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내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외국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것임⁷⁾.

5)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1개월, 그 밖의 출국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 미만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6) 제22대국회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4.10.16. (회의록 p.56-57)

7) 서울행정법원 2016.3.31. 선고 2015구합78540 판결

“가)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보건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로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74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그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는 현실적으로 국내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외국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제공되는 보험급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자에게만 실시함이 원칙인바, 이는 환자의 안전과 약물 처방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보험 제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출국자의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요양비 급여대상의 경우 국내에서 대여하여 국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모든 요양비 급여대상에 대해서 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국외 체류 시 요양비 지급의 요건의 하나로 “국외 체류 기간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실제 보험료 면제 여부에 따라 요양비 지급 여부를 달리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국외 체류 기간에 따라 요양비 지급 여부를 달리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74조제1항8)에서는 직장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9)에서는 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면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74조제1항 단서10)는 국외에 체류하는 직장가입

8)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면제 받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행법 제73조제2항¹¹⁾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50%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업무 목적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가 면제되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율의 50%를 부담하게 됨.
- 개정안이 보험료 면제 여부에 따라 요양비 지급 여부를 달리 하려는 취지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어서 현행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50%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요양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를 경감받으면서 요양비 지급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직장가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고, 보험료 경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

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율의 50%를 적용하고 있음¹²⁾. 건강보험료가 준조세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 제74조¹³⁾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만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국외 체류 시 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12)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2024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초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사유가 국외 체류목적에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2020년 4월 7일 체류목적 구분 없이 국외체류로 일원화되어 이를 입법요류로 보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4. (생략)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삭 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13)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54조제2항에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보
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행한 의사의 요양비
처방전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규정하
고 있는데, 요양비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14)에 따른 용어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
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
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74호) 부칙 제4조¹⁵⁾는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비 항목 중 요양비 대상자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기기(양압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는 휴대가 가능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환자의 질환 관리 등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요양비 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보험료 면제 기간(3개월, 업무상 1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고, 요양비로 지원 중인 의료기기를 국외에서도 지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 부칙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제4조(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보완적인 성격의 급여인 요양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통해 국외 체류 중에도 필요한 요양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요양비 제도 요건과 지속적인 재가치료가 필요한 요양비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법 상 급여정지 규정으로 인해 가입자의 건강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요양비 수급자가 보험료 면제기간(3개월, 업무상 1개월) 미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급여혜택을 제공하여 보험체계 내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한의사협회

- 국외 체류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기기 사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요양비는 해외 의료 이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법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으며 개정안에 따라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국내에 피부양자를 둘 경우에는 동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가입자는 계속해서 요양비 지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¹⁶⁾. 이 경우 외국인 등이 국내에 피부양자를 두고 감경 적

16)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용된 저렴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본인은 해외에 있어도 양압기 등 고가의 요양비 지급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요양비 지급 대상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해외 체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기준으로서 보험료 납부 여부 외에 해외 체류 시 요양비 지급 최대 상한금액이나 일수 등의 기준을 추가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모럴해저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

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